#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성주군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3조)

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기준 마련(안 제4조)

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

마.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획감사실-8366('17. 9.13.)〕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 사항 없음 〔주민복지과-53565('17. 9.28.)〕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17. 9.14.~ '17.10.10.)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6. 운수종사자 대기소(쉼터)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